

휴스턴 감리교 병원(Houston Methodist)
정책 및 절차 F185

제목: 회수정책	발효일자: 2016년 1월 1일
적용대상: 병원 및 PO	개정/검토일자 2016년 1월 1일
출처: 수익주기협의회	목표검토일자: 2019년 1월 1일

I. 정책

휴스턴 감리교 병원(Houston Methodist)에서 제공한 의료 서비스(채무)에 대한 환자들의 채무액을 전문적이고 정중하며 적시에 회수되도록 하는 Houston Methodist의 정책입니다. 100% 재정지원할인에 자격이 되지 않는 Houston Methodist 환자 전원에 대하여 채무와 같은 항목에 대한 납부(지급)는 균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제 3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에 의한 조치를 포함하여 취해질 모든 조치사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Houston Methodist에서는 급여 압류(차압), 주요 거소에 대한 개인적 선취특권(유치권), 신용조회기관 신고 또는 기타 법적 조치와 같이 특별한 회수조치를 절대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 자리 잡은 처리원칙은 환자 전원에 대하여 동등한 존엄과 존중을 통해 대우하고 적절한 청구 및 회수절차가 투명하고 균일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II. 정의

- A. 자기부담금(Self Pay) - 비보험 및 전액 지불해야 하는 환자들은 이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정의합니다.
- B. 보험 후 잔액(Balance after Insurance) - 보험 환자 및 지불해야 하는 잔액 일부 부담금(예: 공제액, 공동보험, 공동부담금)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이 금액은 보험 후 잔액으로 정의합니다.
- C. 환자 부담금(Patient Responsibility) - 자기부담금 및 보험 후 잔액의 두 금액을 포함해 환자가 지불해야 할 일체의 금액.
- D.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 - 비보험, 일부 보험, 정부보건의료혜택 프로그램의 부적격인 환자, 및 재정적 필요분 및 가계소득 심사의 결정에 따른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할인.
- E. 대손금(약성 채권: Bad Debt) - 최초 청구서 발행일자로부터 120일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

- F.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Third Party Collections Agency) - Houston Methodist 를 대행하여 자사 명의로 대손금(악성 채권) 계정의 회수를 시행하는 외부 대행사.

III. 청구서 발행절차

- A. Houston Methodist 는 알려진 바, 의료 서비스 제공 전 또는 그 제공시점(응급의료 제외)에 일체의 환자 부담금에 대한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의 경우, Houston Methodist 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확인된 일체의 의료비용 환자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B.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은 시점에 Houston Methodist 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자기부담금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Houston Methodist 에서는 환자 부담금을 환자에게 즉시 청구하고, 보험으로 지불한 후의 잔액을 환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 C. Houston Methodist 는 이전 청구서의 미납을 이유로 필수 의료행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거부, 연기 또는 지불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D. 환자가 재정지원에 수혜자격이 있을 경우, Houston Methodist 는 환자의 자기부담금액을 할인하거나 보험으로 지불한 다음, 보험후 잔액을 할인할 것입니다. (재정지원할인정책 참고)
- E. 환자가 추정적으로 재정지원의 수혜자격이 되는 것으로 평가 및 최대 할인액 미만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자는 회수과정에서 언제든지 재정지원할인정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대 할인혜택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F. Houston Methodist 는 최소 120 일의 기간에 걸친 최소 4 건의 청구서 발부를 포함하는 정상 청구과정을 이용하여 자기부담금액 및/또는 보험 후 잔액의 미지불액 일체를 환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 G. Houston Methodist 는 최초 청구서와 함께 Houston Methodist 의 재정지원정책을 평문으로 요약한 사본을 포함할 것입니다.

IV. 회수절차

- A. 환자의 최초 청구서가 발행된 후 첫 120 일 동안, Houston Methodist 는 고객계정을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에 의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 B. 잔액 전액을 지불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Houston Methodist 에서는 이자나 위약금 없이 최장 18 개월까지의 연납(납부기한연장) 옵션을 제공합니다. (연납 옵션 정책 참고)
- C. 첫 청구서 일자로부터 120 일이 지나도 환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Houston Methodist 는 미지불 잔액을 대손금(악성 채권)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Houston Methodist 에서는 승인된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들을 통해 대손금으로 간주하는 계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회수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D. 대손금(악성 채권) 분류 또는 대손금 계정을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에 의뢰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언제든지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E. Houston Methodist 는 대손금(악성 채권)을 의뢰할 승인된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들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에 따라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는 대손금의 회수에 관하여 Houston Methodist 정책들을 준수해야 하며, 재정지원 및 연납 옵션의 제공에 관하여 동일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F.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는 전화, 이메일, 회수 관련 공문 및 기타 Houston Methodist 가 승인하고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가운데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대손금의 회수를 지속하게 됩니다.
- G. 일체의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들은 특별한 회수 행위(예: 신용조회기관 신고,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 또는 선취특권(유치권)의 발부, 급여에 대한 압류(차압))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V. 정책 가용성

- A. 웹사이트 - Houston Methodist 는 웹사이트 <http://HoustonMethodist.org/Billing> 을 통해 이 정책이 유용성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는 또한 독자들이 본 정책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무료 링크도 갖추어야 합니다.
- B. 서류 사본 - Houston Methodist 는 우편 및 이메일, 환자등록처, 집중형 청구사무소, 및 응급 담당과를 통해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는 본 정책의 종이재질 무료 사본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 C. 영어 및 기타 언어- Houston Methodist 는 이 정책을 영어 및 의료 서비스의 대상인 여러 주민집단의 다양한 주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D. 연락처 정보 -

Houston Methodist
 Centralized Business Office
 Attn: Self Pay Unit
 701 S. Fry Road
 Katy, TX 77450
 전화: 832-667-5900 (국내) 또는 877-493-3228 (무료)

VI. 권위 있는 참고자료

1. 2010 년도 제정 미 환자보호 및 의료비용 합리화법(PPACA),
2. 미 세법(IRC) 섹션 501r,
3. 재정지원할인정책(FI49), 및
4. 연납 옵션 정책(FI86).

수익주기협의회 권장사항
 최고재무책임자(CFO) 협의회 승인사항
 Houston Methodist 이사회 승인사항

최고행정책임자(CAO) 인가사항:

(파일의 원래 서명)

M. Boom
 사장
 최고경영책임자(CEO)
 Houston Methodist

일자